

❖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❖

- 소방관련학과 졸업생 및 의무소방원 전역자 -

■ 응시원서

- 원서는 중앙소방학교(충남 천안시) 서무과 및 응시지역 시·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접수를 해야 함.
- 원서는 **중앙소방학교** 및 응시지역 시·도 소방본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**다운받아 본인의 필체로 작성**해야 함.
- 정부수입인지(5,000원)는 “우체국”에서 구입.

■ 주민등록초본 이나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확인서

- **소방관련학과 졸업생** :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해야 하며, 전역예정자는 복무기간 및 전역예정일이 표기된 각급 부대에서 발행하는 “**전역예정 증명서**”를 제출해야 함.
- **의무소방원 전역자 및 전역예정자** : 근무부서와 복무기간(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일을 표기)이 표기된 “**의무소방원 복무확인 증명서**” 또는 “**전역증 사본**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.

■ 운전면허증(제1종 운전면허증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)

- 원서접수 종료일까지 면허증을 받은 자로서 원서접수시 “**원본을 반드시 지참**”해야 하며, “**면허증 사본은 식별이 가능**”해야 함.

■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

- 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일반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와는 달리, **시력과 색신검사가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함**에 따라 해당병원에 이점을 반드시 밝혀야 함.
- 응시자는 반드시 시력검사 합격기준은 “**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.3 이상**”임과 색신검사 합격기준은 “**색각이상(색맹 또는 색약)이 아니어야 함**”을 병원 관계자에게 고지하여야 함.
- “소방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”는 제3차시험인 **실기시험에 합격한 자** (2006. 6. 30, 발표)에 **한하여 시·도별 지정병원**(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: 실기시험 당일 공고)에서 **합격자 발표 즉시 반명합판 사진 2매를 지참하여** 검사를 실시해야 함.

■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
-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**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** 제출시 가점 인정
-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**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.**